


국가명	China, 중국			
인증명	HAF604			
품목명	핵(원자력) 전기 및 기계 안전설비	인증구분	강제	
		HS CODE	-	
근거규정	① 민간용 핵안전설비 감독관리조례 《民用核安全设备监督管理条例》(500号令) ② 민간용 핵안전설비 목록 《民用核安全设备目录(2016年修订)》 ③ 수입 민간용 핵안전설비 감독관리규정 《进口民用核安全设备监督管理规定》(HAF604) ④ 수입 민간용 핵안전설비 경외기업 등록승인 관리절차 《进口民用核安全设备境外单位注册登记审批管理程序(2014年8月 修订)》			
인증개요	HAF601 및 HAF604는 '민간용 핵안전설비 감독관리조례'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 등록승인제도이다. 해당 등록승인제도는 신청기업의 국가를 기준으로, 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위치한다면 HAF601 등록승인, 중국을 제외한 타(해외)국가기업(이하 해외기업)이라면 HAF604 등록승인이 필요하다. HAF604는 중국 경내 민간용 핵설비를 위해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와 비파괴검사를 진행하는 해외기업의 등록관리 및 수입 민간용 핵안전설비의 안전검사에 적용된다. 등록승인 대상품목은 '기계설비'와 '전기설비'로 나뉜다.			
적용대상품목	민간용 핵안전설비 목록			
	* 2016년 개정 기준			
	핵동력 공장 등 핵시설 통용 핵안전설비 (28종)	기계설비 (19종)	핵안전 기계설비 (10종)	강철 격납용기, 격납용기 라이너, 압력용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배관과 튜브부품, 펌프, 원자로 내부부재, 제어봉 구동기구
			핵안전 기계설비 (9종)	송풍기, 컴프레서, 밸브, 지지대, 파형관&신축이음매(expansion joint), 갑문, 기계 관통부, 플랜지, 주단조품, 설비모듈
		전기설비 (9종)	핵안전 1E급 전기설비 (7종)	센서, 케이블, 전기 관통부, 계측 제어시스템 캐비닛, 전원 설비, 밸브 구동 장치, 모터
핵안전 1E급 전기설비 (2종)			변압기,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핵연료 후처리 전용 안전 설비 (5층)	기계설비 (4층)	핵안전기계 설비(4층)	저장탱크, 열교환기, 펌프, 밸브
		전기설비 (1층)	핵안전 1E급 전기설비 (1층)	센서

인증절차	<p>① 서류제출 - 매주 화요일 방문접수(환경보호부 행정심사접수처)만 가능</p> <p>② 1차 서류심사 - 1차 예비 서류심사 통과 후 접수 가능</p> <p>③ 접수 -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심사 실시 및 30업무일 이내에 형식심사보고서 발행</p> <p>④ 기술심사 - 서면질의: 기술평가단은 서류검토 후 서면질의서 출제 - 대면회의: 신청기업과 기술평가단의 대면회의(심사)를 진행. 회의 시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신청기업에게 전달. 기업은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 - 현장심사: 신청기업에게 통지 후 현장심사 진행</p> <p>⑤ 전문가 회의 - 상기 절차에 대한 초기보고서 작성 후 전문가회의 진행 (매분기 마지막달의 초, 1회 진행)</p> <p>⑥ 최종 제출 - 신청기업은 심사과정 중 요구된 자료 및 보완자료 제출</p> <p>⑦ 행정정책 결정 및 승인 - 기업의 조건 만족 판단 후 행정결정 및 승인여부 판단</p> <p>⑧ 공문 및 증서 발행 - 국가핵안전국이 승인한 공문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등록승인확인서 발행</p> <p>※ 공 문: 승인완료 후 수령 가능 ※ 확인서: 승인완료 2개월 후 수령 가능 ※ 승인정보는 환경보호부 사이트에 공고됨 ※ 심사요건 미달 시, 6개월 후 재신청 가능</p>
------	--

인증마크	-
------	---

관련기관

등록승인기관

기관명	중국국가핵안전국 (中国国家核安全局, NNSA (National Nuclear Safety Administration))
홈페이지	nnsa.mee.gov.cn
전화번호	+86-10-65646114
이메일	nnsaweb@chinansc.cn
예상비용	무료 (추후 변경가능)
예상소요기간	약 6개월 (기관이 공고한 업무일 기준)

서류제출처

기관명	환경보호부 행정심사접수처 (环境保护部行政审批受理大厅, MEP)
홈페이지	mep.gov.cn
전화번호	+86-10-66556049
이메일	-
예상비용	무료 (추후 변경가능)

시험기관

기관명	없음
-----	----

유의사항

기타	<p>① 유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승인확인서: 5년 - 연장: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1차심사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등록신청 必 <p>② 사후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심사는 해외 신청기업이 아닌 중국 국경 내 민간용 핵시설 운영기관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p>③ 신청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업 - 관련 분야의 업무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5년이상/이하의 공급실적 보유 (자국을 제외한 1개 이상의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대표설비에 대한 완전한 구매 계약서, 업무완료 보고서, 구매자의 검수 보고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함 -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 설비와 장비,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보유 - 업무수행에 적합한 품질보증능력시스템 보유 - 자국의 핵관련부처에서 요구하는 자격 보유 - 사용하는 민간 핵안전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와 비파괴시험기술에대한
----	---

전문성또는검증받은증빙자료를제출해야함
 - 중국의 민간 핵안전설비 국가표준, 산업표준 또는 국무원의 핵안전관리
 부문이 승인 표준을 적용해야 함
 - 최초로 등록을 하는 기업은 최소 두 곳 이상의 중국 내 원자력발전 공
 정회사, 원자력 소유자 또는 핵설비 면허 소지기업의 공급자 평가를 통과
 해야 함

등록승인
 확인서
 샘플



출처 : CCIC KOREA / 2020. 10. 기준